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4서식] <개정 2023. 3. 20.>

증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(내국법인)

を を を 日本									▋ ○ 바랍니		VII.	- 7	본	H	=	C		!2	}	(=	īE		(앞쪽)
1. 신청인																								
법	인 명								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				
대 3	대 표 자 성 명									업 태 • 종 목														
소 재 지																								
2. 환급신청 명세																								
○ →		니어어드				년 월 <u>열</u>) I-I	01	O.I.	②직전전 사업연도				년	월	일	~	년	월	일			
①결손 사업연도 년				1 결	월 일 ~ 년			월	월 일		③직전 사업연도				년	월	일	~	년	월	일			
⑤ 결손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
④ 결손 사업연도 결손금액 ⑥ 소급공제받을 결손금						금액							(7)직	전전	사업	사업연도 :							
설근급액 (=⑦+⑧)														8)직	전 시	나업연	h업연도 :						
				구		분				<u> </u>	직전전	사	사업연도			직전/	사업	업연도			합 계			
법 인 세 액 계 산	9	과서	₩	준																				
	⑩세 율																							
	11)	산출	세	액																				
	⑫공제감면세액																							
	(13)	차김	세	액((1)-(12))																		
환 급	14)	법인	ᅦ세	액(=	= (1))																			
신 청 세	ⓑ치감할 세액[{⑨-([ⓑ≧(⑪-⑬)]					(①, ®)}×세율]																		
액 계 산 —	⑮환급신청세액(⑭-⑮)(⑯≤⑬)																							
⑰예 입 처								은행 (본)지									점							
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(19)계좌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예금																	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시호	 행령	제7	조의	3제3	3항에	따리	나 중	<u>-</u>	기업	결손	금	소급	급공제	세	
								,	신청인	l (번	ó۱)									ا	₫		월 (이)	일
신청인(1																			(인) (서명)					

작성 방법

- ※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.
- 1. ⑤결손금액란: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.
- 2. ⑥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란: ⑤란의 결손금액 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,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, 각 사업연도 공제금액은 ⑨란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3. ⑨과세표준 및 ⑩공제감면세액란: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4. ⑩·⑮란의 세율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.
- 5. ⑪산출세액란 : ⑨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6. ⑭환급신청세액계산의 법인세액란: 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(⑪산출세액란의 금액)을 옮겨 적습니다.
- 7. ⑩차감할 세액란
 - 가. ⑨란의 과세표준에서 ①,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원미만 금액은 절사)을 적습니다.
 - 나. 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,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⑫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.
- 8. 過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9.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계산은 직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 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 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, 공제감면세액(⑩)은 직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공제감면세액을 적습니다.